

2023. 5. 1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2133-7645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2133-7655
담 당 자	박선덕	2133-7698
	권지윤	2133-7658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2695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9쪽

서울시,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23.4.27)에 맞춰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 집중 홍보

-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장소 출입 안 하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해야

-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시 최고 60만원(맹견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시, 민관합동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홍보 실시

-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이하여, 지난 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23. 4. 27.)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 서울시에서는 반려인 준수사항 미준수로 인한 시민 간 갈등 방지 및 시

민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 식표 착용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인의 준수사항(펫티켓)을 지도·홍보, 점검해왔다.

- '22년 4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23. 4. 27. 및 '24. 4. 27.에 걸쳐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되는데, 반려인 준수사항(펫티켓) 강화 등의 내용을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이 많아짐에 따라 지속 지도·홍보 및 점검할 계획이다.

□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고양이)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방식으로 등록한다.
-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은 아니므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변경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 동물등록제도 개요 [붙임 2] 자료 참고

□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3. 4. 27일부터는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되었다.

○ 외출 시 이동장, 이동 가방, 썬넬,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반려인(소유자등)의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이번 '23. 4. 2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 해야 하는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 다중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까지 확대·강화되었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붙임 3] 자료 참고

□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

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되었다.

※ 맹견의 종류 및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붙임 3-2〕 자료 참고

□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4. 4.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되므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사육허가 신청 시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이 되어있어야 하며, 기질 평가 거쳐 최종 사육 허가가 결정된다.
- 종전에 맹견을 기르는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또한 법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분류 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 및 맹견 소유자등이 지켜야할 법적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데 시민이 적극 협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동물등록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 최대 60만원
- 반려견주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50만원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 최대 300만원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붙임 4〕 자료 참고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시와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 활동하며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할 예정이다.

-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붙임 1.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 점검
2. 동물등록 안내
 3. 반려견·맹견 소유자등 준수사항
 4.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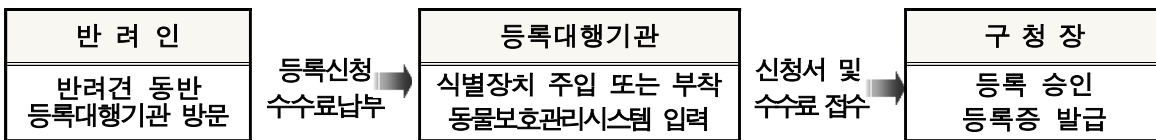


동물등록제도 안내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2조
-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도 등록 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은 아님)

□ 등록방식 및 절차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주입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부착
 - ※ 등록동물에 등록번호(15자리) 부여
- 등록절차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 기관
- 무선전자식별(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등록수수료 : 신규등록-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변경신고-무료

□ 변경신고 :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 등록대행기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고
- 변경신고 대상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 단,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의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의 전화번호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동물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동물 사망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 과태료 :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 동물등록 : 2개월령 이상 반려견(고양이는 소유자 희망 시 등록 가능)
- ◆ 인식표 부착 : **등록대상동물(반려견)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 ◆ 목줄(가슴줄) 착용 등 안전조치
 -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 **이동장치 사용 시 잠금장치 갖출 것(동물탈출 방지)**
 - 내부 공용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동(움직임) 제한
 - 다중·다가구·공동주택+**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 ◆ 배설물 수거
 - 계단, 엘리베이터, 평상, 공원 벤치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곳 소변 포함
- ◆ **소유자등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23. 4. 27. 시행)**

- ◆ 맹견의 종류
 -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 ④스테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
- ◆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맹견 관리규정)
 - ①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함
 - ② 맹견(3개월령 이상) 동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잠금장치 갖춘 이동장치 사용
 - ③ 출입 금지장소 출입금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23. 4. 27. 추가)**
 - ④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 ⑤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매년 3시간) 이수
 - 신규 취득 시 6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동물보호법」 제101조 및 시행령 제35조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	법 제101조제3항제4호	20	40	60
나.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3항)	법 제101조제4항제1·2호	10	20	40
다. 소유자등 없이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법 제101조제4항제3호	20	30	50
라.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고 외출한 경우 * 목줄 길이 2m 이내 : '22. 2. 11일부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법 제101조제4항제4호	20	30	50
마.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2호)	법 제101조제4항제5호	5	10	20
바.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3호)	법 제101조제4항제6호	5	7	10
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법 제101조제2항제2호4	100	200	300
아.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자.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미이수 (법 제21조제3항)	법 제101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차. 맹견을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법 제22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카.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법 제101조제2항제5호	미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10일까지 10만원 - 11일 이후 1만원/일 가산 - 31일 이후 3만원/일 가산 - 61일 이후 6만원/일 가산 (한도 300만원)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다·라·사·아목에 해당)로 인하여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